



## 어학교육원 규정

제정일	1999. 5.25
개정일	2012. 7.22
개정차수	4차
담당부서	어학교육원

### 제 1 장 총 칙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 어학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명칭) 본 어학교육원은 동서울대학교 어학교육원(이하 “어학원”이라 한다)이라 칭한다.

제 3조 (설치 목적) 21세기 지식, 정보사회에 대비하여 학생들이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추어 취업에 대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4조 (주요 업무) 어학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전공 공부에 필요한 기초 영문법, 일본어 문법, 중국어 문법 교육
2. 취업에 필요한 TOEIC / JPT 강의
3. 원어민과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영어, 일어, 중국어 말하기 실력 향상
4.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TOEIC / JPT 시험 실시
5. 유학과 외국어에 대한 안내
6. 기타 외국어 교육

### 제 2 장 조직 및 운영

제 5조 (구성) ① 어학원은 다음과 같은 인원으로 구성된다.

1. 어학원장
2. 영어 원어민 강사 약간 명
3. 일어 원어민 강사 약간 명
4. 중국어 원어민 강사 약간 명

② 필요한 경우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 6조 (원장 등) ① 어학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09. 2.13, 2012. 7.22)

② 원장은 어학원의 목적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종 홍보활동, 외국어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등을 계획하고 실시한다.

③ 외국어 수업은 원어민이 담당하고 필수 영문법은 원장이 유능한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한다.

④ 사무직원은 어학원 업무를 보조한다.

제 7조 (어학원 강의 개설) ① 매학기 12주로 구성되며, 중간고사와 학기말 고사 중에는 수업을 실시하지 않는다.

② 3월 학기는 3월 셋째 주, 9월 학기는 9월 셋째 주에 실시한다.

③ 겨울 방학에는 6주간의 집중교육이 실시되고, 여름방학 중에는 필요에 따라 개강을 할 수 있다.

제 8조 (원어민 교수에 관한 사항) 원어민 교수는 총장의 판단 하에 근무 조건, 보수, 근무 기간을 명시한 계약서를 쌍방의 합의하에 작성한다. (개정 2009. 2.13)

제 9조 (수강료) 수강료는 매 학기 총장이 결정하며, 수강료는 어학원에서 수납한다. 그러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교 사무국으로 수강료 업무를 이전할 수도 있다. (개정 2009. 2.13)

제10조 (환불) ① 등록의 취소 : 어학원이 인정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등록을 취소하고 환불받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환불 신청서를 어학원에 제출하면 절차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다.

② 환불은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
제11조 (강의 시간 및 과목 변경) 수강과목 및 시간변경 신청은 개강 후 1주일 이내에만 가능하다.

제12조 (수강 인원) 회화 수업은 각 반 15명 내외, 기초 문법은 30명 정도로 구성한다.

제13조 (수입 및 지출) 어학원 수입은 전부 학교에 귀속시킨다. 단, 외부강사료, 원어민의 초과 강의료, 어학원 수업에 필요한 경비는 총장의 승인 하에 어학원 수입으로 지출한다. (개정 2009. 2.13)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1999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6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